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9155호, 2023.1.3. 제정, 2023.7.1. 시행)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현행 ‘대기관리권역’에 해당되는 ‘대구광역시 전 지역’에 대해 ‘군위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’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현행 대기관리권역중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를 ‘전 지역’에서 ‘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’으로 자구 변경(안 별표1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동남권의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대기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02